

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8월 28일

발의자 : 정혜영 의원

1. 제안이유

- 하남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정책 효과,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할 수 있는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를 통해 조례 시행 이후의 실효성과 현실 적합성을 점검하고, 평가 결과를 조례의 개정·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와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자치입법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입법영향평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입법영향평가의 실시 및 대상,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·임기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)
- 마. 입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와 평가 결과의 공개·활용 및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

3. 검토의견

가. 입법 필요성

- 조례는 지역의 행정수요와 정책적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제정되나, 시행 이후 상위법령의 제·개정, 사회·경제적 여건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당초 입법목적과 실제 운영 간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그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.
- 이에 일정 기간 시행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달성 여부, 정책 효과 및 개선 필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례의 개정·폐지 등 정비와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특히 조례의 제정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시행 이후 실제 정책 효과와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정비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.
- 따라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입법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본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입법 적정성

- 안 제3조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날부터 4년이 경과하였거나 입법영향평가 실시 후 4년이 경

과한 조례를 평가대상으로 정하고,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와 기관설치·인사운영·업무분장 등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이는 조례 시행 후 일정 기간의 운영실적과 정책 효과가 축적된 이후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, 상위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량이 제한되거나 평가의 실익이 크지 않은 조례를 제외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4조는 입법영향평가의 세부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을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의원, 하남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, 변호사·교수·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조례의 선정 및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전문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안 제5조제4항에서는 의원,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모두 의장이 “위촉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위원의 신분에는 따라 “임명 또는 위촉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다. 법적 타당성

-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운영·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및 자치사무와 관련된 사항으로,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정책 효과 등을 평가하여 향후 입법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9조에서 입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, 예산 집행현황 및 제도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.
- 안 제10조에서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평가 결과를 조례의 정비 및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라. 결론

- 본 조례안은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정책 효과 및 개선 필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.
-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현실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과 지방의회의 입법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